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희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93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이희원 의원(1명)
찬 성 자: 곽향기,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원중,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창진, 도문열, 민병주,
박 석, 서상열, 신복자,
유만희,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정지웅, 최민규, 홍국표
의원(24명)

1. 제안이유

-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 등의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나. 교육감의 헌혈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안 제4조)
- 다.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사항을 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헌혈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교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헌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헌혈 관련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

2. 헌혈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운영

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5조(사업)	△	헌혈교육 사업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향후 시행하려는 사업비용을 추정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가 적어 비용추계가 곤란함
2	제6조(협력체계 구축)	×	협력체계 구축은 통상 별도의 추가비용 ¹⁾ 을 수반하지 않음
3	제7조(포상)	×	별도의 추가비용 ²⁾ 을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5조(사업)에 따른 헌혈교육 사업비용은 현재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비용을 추정하기 곤란함
 - [추계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 또한 헌혈교육 관련 소요금액을 추정하려면 먼저 헌혈교육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소요되는 비용항목을 식별하는 한편 추가로 헌혈교육 사업에 대한 단가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교재인쇄비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1) 협력체계 구축(Ex. 업무협조 MOU)은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일회성 소액지출인 경우가 많아 연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Ex. 현수막, 입간판, 업무 협약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지출)되므로 재정소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예외적으로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단일사업으로 추진 시 추가재정소요 발생의 여지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향후 추진여부를 판단할 만한 합리적 요소가 없어 고려사항에서 제외함

2) 또한 표창은 통상적으로 부상을 수반하지 않아 표창제작비(1인당 5,500원)만 소요되므로 부서내 사무관리비 등으로 충당가능하여 서울시(교육청 포함)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함
⇒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없이 표창을 수여하여야 함